

#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5. 1.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향(안 제3조의2제1항)  
- 제3조의2제1항 중 “2배”를 “5배”로 함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### ■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25. 1. 3.] [대통령령 제35184호, 2025. 1. 3., 일부개정]

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**5배에**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3. 6. 11.]